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0나211376 판결 [계약금반환청구]

전 문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심 담당변호사 김승휘

피고, 피항소인 E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이선희, 김호종

변 론 종 결 2022. 9. 20.

판 결 선 고 2022. 10. 18.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가단122349 판결

주 문

1.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41,360,000원, 원고 B에게 43,720,000원, 원고 C에게 47,720,000원, 원고 D에게 45,22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3. 11.부터 2022. 10.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취소. 원고 A에게 4,136만 원, 원고 B에게 4,372만 원, 원고 C에게 4,772만 원, 원고 D에게 4,522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8. 이후 지연손해금(원고들은 계약 취소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다가, 항소심에서 계약 해제를 이유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내용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부분을 인용하되(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제1심 판결문 3쪽 표 아래 1줄부터 3줄까지를 ‘라. 원고들은 2015. 10. 28.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H 계좌에 각 9,782만 원씩을, 자금관리자인 I 주식회사 계좌에 각 2,118만 원씩을 입금(갑11)하였다. 피고는 2018. 6. 21. 원고 A, C, D에게 분담금 완납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증(갑16)을 작성해 주었고, 20 18. 2. 22. 원고들(갑12)에게, 2018. 4. 9. 원고 A, B, C(갑13)에게, 20 18. 9. 10. 원고 A, C, D(갑14)에게, 2019. 2. 21. 원고들(갑15)에게 분담금 완납을 확인하는 취지의 안내문을 계속 보내었다.’로 바꾸어 쓴다.

제1심 판결문 4쪽 4줄부터 5줄까지를 ‘아. 피고는 위와 같이 2019. 5. 8. 무렵부터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원고들이 분담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 A은 41,360,000원(계약금의 일부), 원고 B은 43,720,000원(계약금의 일부), 원고 C은 47,720,000원(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의 일부), 원고 D은 45, 220,000원(계약금의 일부)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갑7,8)하였고, 이 사건 제1심(2020. 5. 13.자 준비서면 4쪽)에서는 물론 항소심(2021.

6. 11.자 준비서면 10쪽)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시인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고들에 대한 공급계약 이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로 바꾸어 쓴다.

2.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공급계약 목적물이 제3자에게 처분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공급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원하되, 이 사건에서는 일단 피고 스스로 원고들이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금액(원고 A 41,360,000원, 원고 B 43,720,000원, 원고 C 47,720,000원, 원고 D 45,220,000원)에 한하여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급계약 목적물이 제3자에게 처분되어 이행불능 상태임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쟁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이행불능 상태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H가 처리한 업무의 효력 유무에 대한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 및 대응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그 분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의 분담금 지급거절 행위는 물론 피고의 해제 및 목적물 처분 행위에 대하여 어느 쪽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행불능에 대한 책임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공급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쌍무계약인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가 원고들 및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민법 제537조가 정한 채무자위험부담주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원고들이 이미 이행한 것이 있으면 반환해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의 청구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청구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그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9. 5. 8. 무렵부터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H가 이미 처리한 업무(원고들의 분담금 완납 인정)의 효력을 부인하고 원고들이 분담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 A이 41,360,000원, 원고 B이 43,720,000원, 원고 C이 47,720,000원, 원고 D이 45,220,000원을 납입한 사실은 인정(갑7,8)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시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원고들이 이미 이행한 것으로 피고 스스로 인정한 그 금액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2019. 5. 8. 이전에 주식회사 H가 이미 처리한 업무 및 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부가 바로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는 명시적 일부청구인 이 사건의 결론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가 적법하게 해제 등 조치를 하였고, 원고들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그 채권액만큼 반환할 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H가 처리한 업무의 효력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 및 대응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그 분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의 분담금 지급거절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에게 분담금 지급지체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적법한 해제 또는 손해배상채권 등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납입한 돈으로 피고 스스로 시인한 돈(원고 A 41, 360,000원, 원고 B 43,720,000원, 원고 C 47,720,000원, 원고 D 45,220, 000원) 및 그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2. 3. 10. 다음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들의 항소심 청구는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원고들의 계약 취소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황현찬, 판사 오성우